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-631호

「주택법」 제35조제1항 및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61조의2 제3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5월 16일
국토교통부장관

공업화주택 인정

1. 인정업체 및 대표자 : 스타코(주) (대표자 유병희)
2. 공장 소재지 :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7로 6
3. 공업화주택 명칭 : CHS 공업화주택(공동주택)
4. 주요 구성 재료 : 석고보드 스테드 벽체, 철골조 바닥구조체,
테크플레이트, 시멘트몰탈, 스타코 천장 판넬
5. 사용부위 : 간막이벽, 천장을 포함한 개별실
6. 주택용도 : 공동주택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제2호 나목부터 다목까지의
공동주택에 한함)
7. 주택규모 : 지상 4층 이하[6,600(L)×3,000(W)×2,500(H)]
8. 구조형식 : 철근콘크리트
9. 유효기간 : 2022년 5월 16일 부터 2027년 5월 15일 까지
10. 주의사항
 - CHS 공업화주택의 인정범위는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제2호 나목
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에 한정하고, 스타코(주)에서 제시한 설계
도서에 한하여 적용 가능함
 - 공업화주택(공동주택) 건설 시 에너지절감을 위한 냉·난방설비, 전기,
배관 및 발코닌 확장 등에 대하여 건축사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
건설하여야 함